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전수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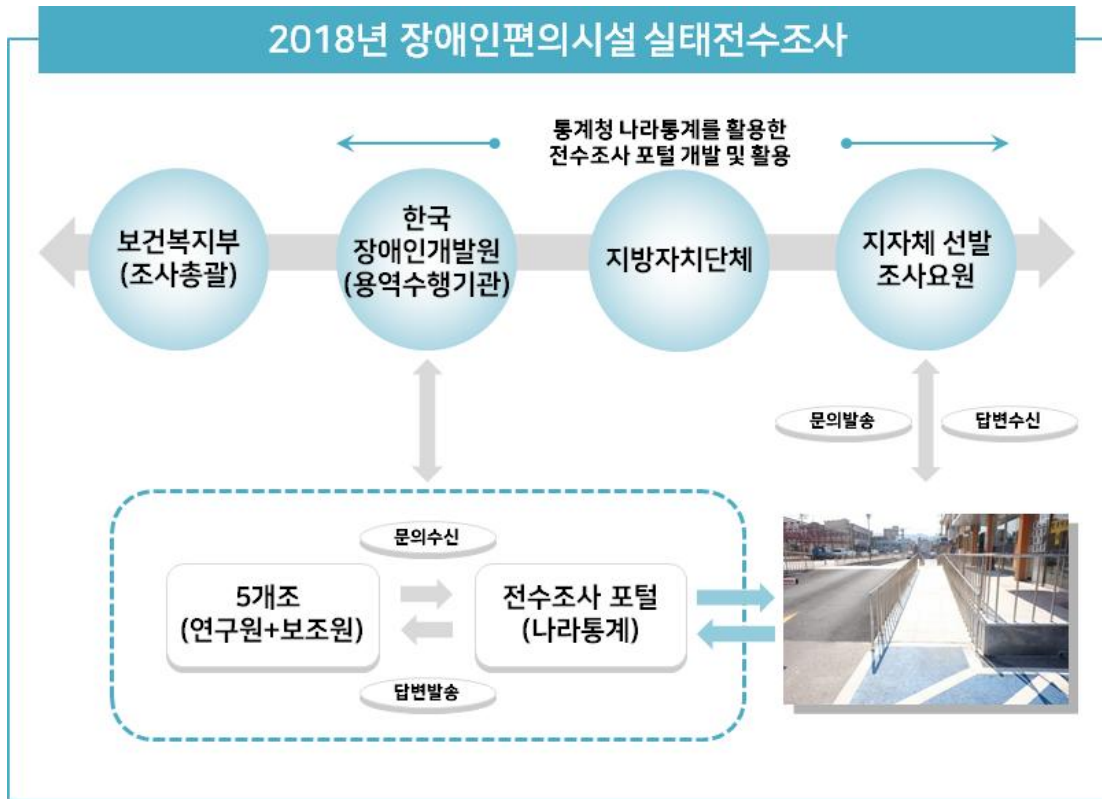
2018. 5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유형 코드	용도구분																										
	대분류	세분류																									
	중근린생활시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중근린생활시설	이용원 미용원 일 반목욕장																									
	중근린생활시설	지역자치센터																									
	중근린생활시설	파출소 지구대																									
	중근린생활시설	우체국																									

유형 코드	용도구분																										
	대분류	세분류																									
	중근린생활시설	보건소																									
	중근린생활시설	공공도서관																									
	중근린생활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중근린생활시설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중근린생활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및 지사																									
	중근린생활시설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중근린생활시설	대피소																									
	중근린생활시설	공중화장실																									
	중근린생활시설	의원 치과의원 한 의원 조산소 산후조리원포함																									
	중근린생활시설	지역아동센터																									
	중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중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문화 집회시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 장 음악당 서어커 스장																									
	문화 집회시설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 주장																									
	문화 집회시설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회 의장																									
	문화 집회시설	전시장 박물관 미 술관 과학관 기념 관 산업전시장 박 람회장																									
	문화 집회시설	동식물원																									
	종교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 도원																									
	판매시설	도매 소매시장 상 점																									
	의료시설	종합병원																									
	의료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 병원 정신병원 요양 병원																									
	의료시설	격리병원 진염병원 마약진 료소																									
	교육연구시설	특수학교																									
	교육연구시설	유치원																									
	교육연구시설	초등학교																									
	교육연구시설	중학교																									

유형 코드	용도구분																										
	대분류	세분류																									
	교육연구시설	고등학교																									
	교육연구시설	전문대학																									
	교육연구시설	대학교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수원등 직 업훈련소 학원 자동 차학원 무도학원 제외 등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노유자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유자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포함																									
	노유자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이의 사회복지시설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유스호 스텔																									
	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시설	운동장 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 트 로올러 스케이트 승마 사 격 궁도 골프 과 부수되는 건축물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업무시설	금융업소 등 일반업무시설																									
	업무시설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사																									
	업무시설	국민연금공단 및 지사																									
	업무시설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및 지사																									
	업무시설	근로복지공단 및 지사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 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 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공장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자동차관련시설	운전학원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방송통신시설	전신전화국																									

유형 코드	용도구분																	
	대분류	세분류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묘지관련시설	화장시설																
	묘지관련시설	불안당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 장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	휴게소																
	장례식장	장례식장 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은 제외																
	공원	도시공원 국립 도 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주택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공동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기숙사																

1.1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1	해당시설에 주출입구 접근로가 있는지?(모두)

▶ 1.1.1.1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	해당 (1)	※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비해당을 선택하며, 1.1.2~1.1.3항목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2	해당건물 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한가?(모두)

평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2.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마감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우나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1.1.2.2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로 틈새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이며 평탄하지 않거나 2cm초과하며 평탄하게 마감	자갈 및 모래 등으로 틈새가 2cm초과하고 평탄하지 않음
▶ 1.1.2.3 이음새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높이차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정으로 불	높이차가 있거나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한 방향이 2cm초과	높이차 있으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양방향 2cm초과

Type	No	대상시설용도				현장용
H4	예시파일	2018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록지				장애인복지시설
번호		대상시설에 부여된 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한다.				
대상지역		광역자치단체는 약칭으로 입력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식명칭으로 아래와 같이 입력한다.				
시설명		- 서울특별시 중로구 → 서울중로구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제주서귀포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부산해운대구 - 광주광역시 서구 → 광주서서구 - 전라북도 김제시 → 전북김제시 - 충청남도 연기군 → 충남연기군				
상세주소						
조사일자		상세주소를 입력하여야 조사결과 값이 산출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상세주소 세밀주소(도로주소) 설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1						
1121		주출입구 접근로				
1122						
1123						
1131						
1132						
1141						
1142						
1151						
1161						
1162						
116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1211						

Type	No	대상시설용도				현장용
A14		2018 편의시설 전수조사 기록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포함)
번호	11					제1종 근생
대상지역	서울강남구					
시설명	투명치과빌딩					
상세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4					
조사일자	5. 29					
1111	1					
1121	1					
1122	1					
1123	1					
1131	2					
1132	1					
1141	1					
1142	3					
1151						
1161						
1162						
1163						
1211	1					

1. 매개시설

평가기준

모든 이용자가 해당시설물의 대지경계선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이동·접근하는데 적합하여야 하며, 보행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1.1 주출입구 접근로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1	해당시설에 주출입구 접근로가 있는지?(모두)

▶ 1.1.1.1 주출입구 접근로에 대한 대상시설 해당 여부	해당 (1)	※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 접근로가 없는 경우에도 비해당을 선택하며, 1.1.2~1.1.6항목은 모두 적정으로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2	해당건물 내 보도 및 접근로의 바닥재질과 마감상태는 보행 장애인에게 적절한가?(모두)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2.1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마감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으며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우나 넘어질 염려 없음	미끄러운 재질로 마감
▶ 1.1.2.2 바닥면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게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로 틈새없이 평탄하게 마감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 2cm이하이며 평탄하지 않거나 2cm초과하며 평탄하게 마감	자갈 및 모래 등으로 틈새가 2cm초과하고 평탄하지 않음
▶ 1.1.2.3 이음새 높이가 동일하고,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 그 간격이 2cm이하	높이차 없으며, 격자구멍 등이 양방향 모두 2cm이하 ※ 다만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 적정으로 봄	높이차가 있거나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한 방향이 2cm초과	높이차 있으며, 격자구멍 또는 틈새의 양방향 2cm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3	보도 및 접근로의 유효폭과 기울기는 '장애인등편의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가?(모두)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3.1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0cm 이상 확보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0cm이상	일부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0cm미만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120cm미만
▶ 1.1.3.2 보도 등의 진행방향 기울기는 1/18 이하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8 (3.18°) 이하	접근로 일부 구간 기울기 1/12(4.76°)이하 ~ 1/18(3.18°)초과	접근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4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해 보행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으며 연속성이 있는가? (모두)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4.1 차도와의 경계부분에 경계석·울타리·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공작물 설치가 곤란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과 색상을 구분 설치)	보행통로와 차도에 공작물 또는 경계석 등이 설치됨 ※ 이동식화분 설치시는 적정	보행통로용 안전선만 색상 표기 ※ 라바콘 설치시는 미흡	보행통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
▶ 1.1.4.2 접근보행통로에 차량, 안내판, 가로수, 화분 등의 보행 장애물이 없어야 함	대지경계선 내 모든 보행통로에(폭 120cm이상, 높이 210cm까지 가지치기) 장애물이 없음 ※ 이동식 장애물인 경우 적정에 포함	대지경계선 내 일부 구간 보행통로(폭 1.2m미만, 높이 210cm까지 가지치기)에 장애물이 있음	대지경계선 내 모든 구간에 보행안전통로 없이 차량과 같은 레벨에서 접근함

※ 보행자 접근시 차량과의 교차동선이 없는 경우는 보행안전통로가 확보된 것으로 간주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5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A3~A11, A13, C1, C2, C4, C5, F1~F3, G1, G3~G7, H4, H5, K1, K3~K6, L2, S1)

▶ 1.1.5.1 주출입구 접근로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해당 (1) (→ 1.1.6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1.2 주차구역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1.6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1.6.1 점자블록 형태 (주출입구와 대지경계선까지의 연계)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1.1.6.2 설치위치	전체구간 주출입구와 최단거리로 설치	설치는 되어 있으나 보행안전통로와 상관없이 차도 등에 설치	미설치
▶ 1.1.6.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1.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1	해당시설에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는가?

▶ 1.2.1.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여부	해당 (1) (→ 1.2.2 항목부터 시작)	※ 비해당 (2) (→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항목부터 시작)
---------------------------	-----------------------------	--

※ 법정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비해당으로 체크하고 1.3항목으로 이동.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2	주차장의 설치위치, 크기 및 수는 적절한가?

▶ 1.2.2.1 대상시설 총 주차 대수	▷ 1.2.2.1.1 법정대수	▷ 1.2.2.1.2 실제 설치 주차대수
	()대	()대
▶ 1.2.2.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총 주차 대수	▷ 1.2.2.2.1 법정대수	▷ 1.2.2.2.2 실제 설치 주차대수
	()대	()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2.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적정 주차면수 확보		규정비율의 100%이상	규정비율의 100%미만	미설치
▶ 1.2.2.4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 가장 가까운 주차구역에 설치	주차 후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로 접근가능하다는 표시(경사로 표시 등)가 있으나, 출입구로부터 다소 거리가 있음	미설치
▶ 1.2.2.5 크기는 폭 330cm이상, 길이 500cm 이상(평행주차인 경우 폭 200cm이상, 길이 600cm이상)의 주차공간의 확보		모든 주차면이 규정 크기 준수	일부 주차면이 규정 크기에 미달	모든 주차면이 규정 크기 미달
▶ 1.2.2.6 주차공간 바닥마감의 적정성		전체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마감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또는 평탄하지 않은 마감	잔디블록 등 2cm초과의 틈새로 인해 휠체어 이동 곤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2.3	주차구역의 표시, 유도, 안내표시는 적절하며 주출입구까지의 안전통로는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2.3.1 장애인전용주차장 바닥표시 및 입식 안내표시의 적정 설치		바닥 및 입식표시 규격에 맞게 모두 적정 설치, 안내표지내용 적정 기재	바닥 또는 입식표시 중 한 가지만 적정 설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없음
▷ 1.2.3.1.1 ※ 바닥표시 적정여부		법 규격에 맞추어 설치	법 규격 이외의 표시가 됨	표시 없음
▷ 1.2.3.1.2 ※ 입식안내표시 적정여부		법 규격에 맞추어 설치	법 규격과 다름	표시 없음
▶ 1.2.3.2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기까지 장애인 안전통행로 확보		모든 구간에 폭 120cm이상 안전보행통로가 연속적으로 설치	안전보행통로 일부구간이 120cm미만	모든 구간에 별도의 안전보행통로 없음

※ 바닥표시와 입식안내표시는 해설서를 참고

1.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의 형태는?

▶ 1.3.1.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방식	단차 없음(1) (주출입문 앞까지 단차없음) (→ 2.1.3으로)	계단+경사로(2)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과 경사로를 병행하여 설치) (→ 1.3.2.1~1.3.2.8 답변 후 1.3.3으로)	계단(3) (주출입문 앞까지 계단만 설치) (→ 1.3.2.1~1.3.2.8 모두 미설치 처리 후 1.3.3으로)	경사로만 설치(4) (주출입문 앞까지 경사로만 설치) (→ 1.3.2.1~1.3.2.8 답변 후 1.3.3으로)
-----------------------------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2	해당시설의 주출입구는 휠체어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접근이 가능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높이 차이	▶ 1.3.2.1 해당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는 2cm이하가 되고 주출입문까지의 휠체어 등의 접근 가능여부	2cm이하의 단차, 또는 그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2cm이상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치	2cm를 초과하는 단차만 있음
	▷ 1.3.2.1.1 주출입구 높이차이	없음	2cm 이하	2cm 초과
	▷ 1.3.2.1.2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일부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초과
경사로의 구조	▶ 1.3.2.2 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폭이 120cm이상 설치	단차 없이 접근, 또는 경사로 참(150cm×150cm)과 출입구전면의 연결 접근 공간 폭이 120cm이상	출입구 전면의 연결접근 공간 폭이 120cm미만 또는 경사로가 설치된 경우이면서 전·후면 활동공간이 150cm×150cm 미만인 경우	
	▶ 1.3.2.3 경사로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5c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초과 휴식참 설치	미설치
	▶ 1.3.2.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함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게 설치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1.3.2.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0cm×150c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모든공간 150cm×150c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일부공간 150cm×150cm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활동공간 미확보
	▷ 1.3.2.5.1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일부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초과

※ 경사로의 길이가 180cm미만이거나 높이가 15cm미만인 경우에는 1.3.2.6~1.3.2.8은 평가하지 않음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경사로 손잡이	▶ 1.3.2.6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양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한쪽 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미설치
	▶ 1.3.2.7 손잡이의 높이 적정여부	높이는 80 ~ 90cm	높이는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미설치
	▶ 1.3.2.8 손잡이의 굵기 적정여부	굵기는 3.2~3.8cm	굵기는 3.2cm미만 또는 3.8cm이상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3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자블록 설치되어 있는가?

▶ 1.3.3.1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에 점자블록의 설치여부	유 (1) (→ 1.3.4 항목부터 시작)	무 (2) (→ 2.1 내부시설 항목부터 시작)
---	----------------------------	-------------------------------

- ※ 계단과 경사가 함께 설치된 경우이면서 점자블록을 경사로쪽에만 설치한 경우에는 유(1)로 표기하고
1.3.4.1부터 1.3.4.3까지는 미설치로 표기하여야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1.3.4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1.3.4.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1.3.4.2 설치위치		단차가 있는 전체구간에 점형블록을 설치	단차가 있는 일부구간에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 1.3.4.3 시공방법		바닥마감재와 동일하게 마감	바닥마감재보다 돌출되게 마감	미설치

- ※ 주출입문의 단차와 구별할 필요가 있음

- ※ 1.3.1.1에서 경사로만 설치(4)된 경우 시작과 끝 부분에서 30cm이격하여 점형블록을 설치하도록 함.

2. 내부시설

평가기준

모든 시설은 진출입 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하며, 수평 및 수직이동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2.1 출입구(문)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1	해당시설의 진출입문은 전.후면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 지형 구조상 불가피하게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출입문을 주출입문으로 인정함.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1.1 주출입문의 높이차이 여부		주출입문의 단차가 2cm이하		주출입문의 단차가 2cm 초과
▶ 2.1.1.2 주출입문 통과유효폭 80cm이상 확보 여부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80cm이상		주출입문의 유효폭이 80cm미만
▶ 2.1.1.3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0cm이상 확보		주출입문을 연 후 전.후면 유효거리 120cm이상	주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가 120cm미만	전.후면 유효거리 미확보
▶ 2.1.1.4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90cm사이에 설치		높이 80~90cm 사이에 손잡이 설치 (자동문 포함)	높이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위치에 손잡이 설치	수동문이며 손잡이 없음
▶ 2.1.1.5 주출입문 손잡이 형태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자동문포함)	돌림형 손잡이 (동근형 손잡이)	수동문이며 손잡이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2	주출입문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2.1.2.1 주출입문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유 (1) (→ 2.1.3 항목부터 시작)	무 (2) (→ 2.1.4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3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3.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2.1.3.2 설치위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이격해서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이격하지 않거나 또는 문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음	미설치
▷ 2.1.3.2.1 30cm이격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이격해서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30cm이격하지 않음	미설치
▷ 2.1.3.2.2 문 폭 만큼 설치		문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문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하지 않음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1.4	해당시설 일반출입문의 활동공간, 유효폭, 구조, 턱낮추기 등이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1.4.1 출입문턱의 높이 차이		모든 문에 단차 2cm이하	일부 문의 단차 2cm초과	모든 문의 단차 2cm초과
▶ 2.1.4.2 출입문 통과유효폭 80cm이상 확보 여부		모든 문의 유효폭이 80cm이상	일부 문의 유효폭이 80cm미만	모든 문의 유효폭이 80cm미만
▶ 2.1.4.3 출입문의 전·후면 유효거리를 120cm 이상 확보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0cm이상	일부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0cm미만	모든 문의 전·후면 유효거리 120cm미만
▶ 2.1.4.4 <u>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의 손잡이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80~90cm사이에 설치</u>		모든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80~90cm사이에 설치	일부 손잡이(레버식) 바닥면으로부터 80cm미만, 90cm초과하여 설치	미설치
▶ 2.1.4.5 <u>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의 출입문에 점자표지판 설치위치</u>		출입문 손잡이 쪽 벽면에 점자표지판 중심을 기준으로 120~150cm 높이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은 사무실, 민원실 등이며 창고나 전기실, 기계실 등은 포함하지 않음

2.2 복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1	해당시설 복도의 유효폭 확보, 턱낮추기, 단차해소, 보행장애물 제거 등은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2.1.1 복도의 유효폭 120cm이상 확보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0cm이상	일부 복도의 유효폭이 120cm이상	모든 복도의 유효폭이 120cm미만
▶ 2.2.1.2 복도 바닥면의 단차는 2cm 이하로 확보.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등 설치		2cm이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또는 승강설비 설치)	단차가 있는 부분에 경사로를 1/12초과 설치	2cm초과의 단차만 있음 (계단 등)
▷ 2.2.1.2.1 복도 바닥면의 단차		모든 복도 바닥면에 2cm이하 단차	일부 복도에 2cm 이하 단차 있음	일부 복도에 2cm 초과 단차 있음
▷ 2.2.1.2.2 복도 경사로의 기울기		복도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복도 경사로 일부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복도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초과
▶ 2.2.1.3 복도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0cm이상의 유효높이 확보 여부 210cm이내 장애물 있는 경우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여부		210cm이내에 보행장애물 없음 (장애물이 있을 경우 바닥면에서 60cm이하의 보호벽, 난간 설치)	-	210cm이내에 장애물이 있으나 아무런 접근방지 설비가 없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2	현재 조사대상시설이 장애인전용시설인가?

▶ 2.2.2.1 장애인전용시설 여부	해당 (1) (→ 2.2.3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2.3 해당시설 층수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2.3	장애인전용시설 복도의 손잡이는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장애인전용시설만 평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2.3.1 복도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복도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복도 측면에 부분적으로 손잡이설치	미설치
▶ 2.2.3.2 손잡이 지름 3.2~3.8cm사이 설치		손잡이 지름 3.2~3.8cm사이 설치	손잡이 지름 3.2cm미만 또는 3.8cm초과	미설치
▶ 2.2.3.3 손잡이 설치높이 80~90cm사이 설치		손잡이 설치높이 80~90cm사이 설치 (이중 설치시 : 상부 85cm내외, 하부 65cm 내외)	손잡이 설치높이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미설치

2.3 해당시설 층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3.1	현재 조사대상시설은 몇 층 건물입니까? (층간이동관련 평가: 계단, 승강기 등)	
▶ 2.3.1.1 대상시설이 1층 이거나 2층 이상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직이동 설비의 조사 가능 여부	1층 (1) (→ 3 위생시설 항목부터 시작)	2층 이상 (2) (→ 2.4.1 항목부터 시작)

2.4 계단 또는 승강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1	수직이동 수단으로 계단 또는 경사로, 리프트, 승강기 중에서 장애인 이용 가능 시설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2.4.1.1 대상시설에 설치된 수직이동설비는 모두 체크	계단 (1) (→ 2.4.2 계단)	경사로 (2) (→ 2.4.3 경사로)	승강기 (3) (→ 2.4.4 승강기)	리프트 (4) (→ 2.4.5 리프트)	에스컬레이터(5) (→ 2.4.6 에스컬레이터)

※ 설치되어 있는 모든 수직이동 수단에 대해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2	<계단>	계단의 유효폭, 휴식참, 난간의 굽기 및 높이 등은 적절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계 단 의 구조	▶ 2.4.2.1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0cm 이상 확보	모든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0cm이상	일부 계단 및 참의 유효폭 90cm~120cm	모든 90cm미만
	▶ 2.4.2.2 계단의 첩면 설치 여부	모든 계단에 첩면 설치		일부 계단에 첩면 미설치
	▶ 2.4.2.3 첩면의 높이, 디딤판의 너비, 계단코 설치 여부	첩면 18cm이하이며, 디딤판 28cm이상이며 계단코 3cm미만	첩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중 1~2개 적합	첩면, 디딤판, 계단코 3개의 기준 모두 미흡
	▷ 2.4.2.3.1 첩면의 높이	18cm이하	-	18cm초과
	▷ 2.4.2.3.2 디딤판의 너비	28cm이상	-	28cm미만
	▷ 2.4.2.3.3 계단코의 길이	3cm미만	-	3cm이상
손잡이	▶ 2.4.2.4 계단측면에 손잡이 굽기 3.2~3.8cm사이 설치	굽기는 3.2~3.8cm	굽기는 3.2cm미만 또는 3.8cm초과	미설치
	▶ 2.4.2.5 계단측면에 높이 80~90cm에 손잡이가 연속되게 설치	높이는 80~90cm (이중 설치시 : 상부 85cm내외, 하부 65cm 내외)	높이는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미설치

	▶ 2.4.2.6 손잡이 끝부분에 30cm이상 수평손잡이를 연장설치	끝부분 30cm이상 수평손잡이 설치	끝부분 30cm미만 수평손잡이 설치	미설치
시각장애인 유도안내	▶ 2.4.2.7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중간참 포함) 30cm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30cm이격)에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계단의 일부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중간참에 미설치	미설치
	▷ 2.4.2.7.1 점형블록 표준형 설치	표준형 설치	비표준형 설치	미설치
	▶ 2.4.2.8 손잡이에 점자표기	모든 층 설치	일부 층 설치, 점자내용이나 설치위치가 틀리게 설치됨	미설치

※ 유효폭은 손잡이 내측 폭을 기준으로 평가함.

※ 적정설치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교육자료를 참고

※ 계단의 형태는 곧은 계단(직선형), 꺾은 계단(굴절형)을 기본 형태로 하며, 교육 자료를 참조

※ 손잡이 끝부분의 수평부분 길이를 측정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3	<경사로>	층간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휴식참, 난간(손잡이), 안내 등은 적절한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3.1 경사로의 유효폭 120cm이상 확보		전체구간의 경사로 유효폭이 120cm이상	일부구간의 경사로 유효폭이 90cm~120cm미만	전체구간 경사로 유효폭이 90cm미만

※ 법 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한 경우 90cm까지 경사로 유효폭 완화 (적정으로 표기)

경사면의 경사	▶ 2.4.3.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75c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이내 마다 휴식참 설치	높이 75cm초과 휴식참 설치	미설치
	▶ 2.4.3.3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이하 설치	전체 1/12(4.76°)이하	1/8(7.13°)이하 ~ 1/12(4.76°)초과	전체 1/8(7.13°)초과
	▶ 2.4.3.4 경사로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음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함	바닥이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하지 않거나, 또는 바닥이 미끄럽거나 평탄하게 설치	바닥이 미끄럽고 평탄하지 않음
	▶ 2.4.3.5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휴식참에 150cm×150c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모든공간 150cm×150c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일부공간 150cm×150cm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활동공간 미확보
	▷ 2.4.3.5.1 경사로의 기울기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일부구간 기울기 1/12(4.76°) 이하	경사로 전체구간 기울기 1/12(4.76°) 초과

※ 경사로의 길이가 180cm미만이거나 높이가 15cm미만인 경우에는 2.4.3.6~2.4.3.8은 평가하지 않음

경사면의 손잡이	▶ 2.4.3.6 양측면에 손잡이의 연속 설치	양측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한쪽 면에 손잡이 연속 설치	미설치
	▶ 2.4.3.7 손잡이의 높이 적정여부	높이는 80~90cm (이중 설치 시 : 상부 85cm내외, 하부 65cm내외)	높이는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미설치
	▶ 2.4.3.8 손잡이의 굵기 적정여부	굵기는 3.2~3.8cm	굵기는 3.2cm미만 또는 3.8cm초과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4	승강기는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4.1 승강기 전면에는 140cm×140c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0cm×140c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140cm×140c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0cm×120cm 미만의 활동공간
▶ 2.4.4.2 대상시설 허가연도 2008년 1월 1일 이후 여부		2008.1.1 이전 허가 (1) (→ 2.4.4.3 다음 항목으로)	2008.1.1 이후 허가 (2) (→ 2.4.4.4 항목으로)	
2008.1.1 이전	▶ 2.4.4.3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10cm이상, 깊이 135cm 이상	폭 110cm이상이며 깊이 135cm이상	폭 110cm미만, 또는 깊이 135cm미만	폭 110cm미만이며 깊이 135cm미만
2008.1.1 이후	▶ 2.4.4.4 승강기 내부의 유효바닥 면적은 폭 160cm이상, 깊이 135cm이상	폭 160cm이상이며 깊이 135cm이상	폭 160cm미만, 또는 깊이 135cm미만	폭 160cm미만이며 깊이 135cm미만
휠체어 사용자 조작반	▶ 2.4.4.5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	우측면에 가로형 조작반 설치(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0cm×140cm이상인 경우 좌우측 구분안함)		미설치
	▶ 2.4.4.6 승강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5cm내외로 설치	(가장 낮은 버튼의 위치) 80~90cm에 설치	(가장 낮은 버튼의 위치)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미설치
일반조작반	▶ 2.4.4.7 승강기 내부 조작설비는 버튼식으로 설치	조작설비는 누름 버튼식	버튼식이 아닌 경우	
	▶ 2.4.4.8 승강기 내부 조작반의 층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설치	일반조작반에 점자표지 설치		일반조작반에 점자표지 미설치
▶ 2.4.4.9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2.4.4.10 점자블록의 설치위치	승강기 호출버튼 전면 30cm 이격하여 설치	승강기 출입문 전면에 설치	미설치	
승강기 외부	▶ 2.4.4.11 승강기 외부에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시각설비, 승강기 도착음 작동 여부	도착여부 시각설비 및 승강기 도착음 작동	도착여부 시각설비 또는 승강기 도착음 작동	미설치
	▷ 2.4.4.11.1 도착여부를 표시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1.2 도착음 동작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승강기 내부	▶ 2.4.4.12 승강기 내부에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토글*(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2.1 도착층,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설치 여부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2.2 음성신호장치 설치 여부	전 층 작동	일부 층 작동	미설치
	▷ 2.4.4.12.3 토글*(문개폐, 층정보, 운행방향) 설치 여부	전 층 설치	일부 층 설치	미설치
	▷ 2.4.4.12.4 승강기 전 층 운행 여부	전 층	일부 층	-

※ 토글: 선택, 취소가 가능한 스위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5	휠체어리프트는 유효한 바닥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 2.4.5.0 리프트 형태	경사형리프트 (1) 2.4.5.1~2.4.5.3	수직형리프트 (2) 2.4.5.1~2.4.5.2
---------------------	-------------------------------	-------------------------------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5.1 리프트 상부와 하부에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 또는 하부 중 한 곳만 140cm×140cm이상의 승강장 활동공간 확보	상부와 하부 모두에 140cm×140cm미만의 승강장 확보
▶ 2.4.5.2 리프트 유효바닥면적 경사형 폭76cm×길이105cm이상 수직형 폭90cm×깊이120cm이상	기준 이상의 바닥면적	폭 또는 길이(또는 깊이)가 기준 미달	폭과 길이(또는 깊이) 모두 기준미달
▶ 2.4.5.3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설치 여부 및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60cm이내 돌출	모든 항목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음	1개 이상 항목이 설치기준에 미달	모든 항목 기준 미달
▷ 2.4.5.3.1 호출벨, 작동설명서, 비상정지장치, 과속제한장치, 내부잠금장치 설치	유	-	무
▷ 2.4.5.3.2 지정장소 보관의 경우 60cm이내 돌출	60cm이내 돌출	60cm초과 돌출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2.4.6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 및 속도, 디딤판, 손잡이의 설치가 적정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2.4.6.1 에스컬레이터 유효폭 : 80cm 이상	유효폭 80cm 이상	유효폭 80cm 미만	-
▶ 2.4.6.2 에스컬레이터 속도 : 분당 30m이내	분당 30m 이내	분당 30m 초과	-
▶ 2.4.6.3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디딤판 3장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가능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음	-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없음
▶ 2.4.6.4 에스컬레이터 양측면의 이동식손잡이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임	양측면의 이동식손잡이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임	양측면의 이동식손잡이가 디딤판과 다른 속도로 움직임	-
▶ 2.4.6.5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에는 120cm 이상 수평이동손잡이를 설치	양끝부분에는 120cm 이상 수평이동손잡이를 설치	양끝부분에는 120cm 미만 수평이동손잡이를 설치	-
▶ 2.4.6.6 수평이동식 손잡이 전면에 100cm 이상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수평이동식 손잡이 전면에 100cm 이상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수평이동식 손잡이 전면에 100cm 미만 수평고정손잡이 설치	미설치
▶ 2.4.6.7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하였으나, 내용이 맞지 않거나, 점자표지판이 훼손되어 알기 어려움	1 미설치

3. 위생시설

평가기준

위생시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3.1 일반사항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1	해당시설에서의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대변기)에 대한 일반사항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1.1.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층간으로 남녀구분된 것은 적정	남·여 공용으로 설치	미설치
▷ 3.1.1.1.1 장애인화장실 분리 설치 여부		분리설치(1)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2)	-	미설치(3)
▷ 3.1.1.1.2 남·여화장실 분리 설치 위치		동일한 층에 남녀 각각 설치(1) 다른 층에 분리되어 남녀 각각 설치(2)	-	-
▶ 3.1.1.2 화장실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설비 유무		색상 및 문자로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며 식별이 용이함	색상 또는 문자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으나 구분하기 어려움	미설치
▷ 3.1.1.2.1 색상 적용 여부		적용	-	미적용
▷ 3.1.1.2.2 문자 적용 여부		적용	-	미적용
▶ 3.1.1.3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통로 연결 여부		접근통로 폭이 120cm이상	접근 통로 폭이 90cm ~ 120cm미만	접근 통로 폭이 90cm미만
▶ 3.1.1.4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 칸의 단차포함)가 2cm이하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 3.1.1.5 화장실 바닥표면(마감상태)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논슬립타일 등)	-	미끄러운 재질(일반타일)
▶ 3.1.1.6 남·여화장실에 영유아용거치대 설치 여부		영유아용거치대 1곳 이상 설치(남·여각각)	남·여중 1개 설치	미설치
▶ 3.1.1.7 남·여화장실 구별을 위한 점자표지판 부착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0cm 높이에 설치*	점자표지판 설치 높이와 위치가 적정하지 않음	미설치
▶ 3.1.1.8 (장애인복지시설만 해당) 화장실에 촉지도식 안내표시와 음성 유도장치 설치 여부		촉지도식 안내표시와 음성 유도장치 설치	촉지도식 안내표시와 음성 유도장치 설치했으나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 설치(촉지도의 내부 변기 위치 등이 다름)	미설치
▷ 3.1.1.8.1 촉지도식 안내표시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 3.1.1.8.2 음성유도장치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장애인화장실이 별도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화장실을 평가함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2	화장실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3.1.2.1 화장실에 점자블록 설치여부	유 (1) (→ 3.1.3 항목부터 시작)	무 (2) (→ 3.2 대변기 항목부터 시작)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1.3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1.3.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3.1.3.2 설치위치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에 점형블록을 30cm전면에 설치	일반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으나 입구를 찾기 어려운 경우 또는 장애인화장실 출입구에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3.2 대변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1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3.2.1.1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 설치여부	유 (1) (→ 3.2.2 항목부터 시작)	무 (2) (→ 3.3 소변기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2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의 구조, 화장실의 크기, 위생기기의 설치위치가 휠체어 등의 접근과 이동에 적절한가? (휠체어사용자 이용가능 화장실(대변기)을 평가)			
평가 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2.2.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자동문, 밖여닫이, 미닫이, 접이문 (안여닫이인 경우 내부공간 확보)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안여닫이 형태로 내부공간 미확보, 또는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 3.2.2.1.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자동문(1) 미닫이문(2) 밖여닫이문(3) 안여닫이문-내부공간 확보(4)	주름문(5)-잠금장치 있음	미설치
▶ 3.2.2.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80cm이상 확보		문의 유효폭이 80cm이상		문의 유효폭이 80cm미만
▶ 3.2.2.3 대상시설 2005년 12월 30일 이후 허가 신청된 신축건축물 여부		2005.12.29 이전 건축물 (1) (→ 3.2.2.4 항목으로)	2005.12.30 이후 건축물 (2) (→ 3.2.2.5 항목으로)	
2005.12.29 이전 기존 건축물 인 경우	▶ 3.2.2.4 바닥면 크기가 폭 100cm이상, 깊이 180cm 이상 확보	바닥면 크기가 폭 100cm이상이며 깊이 180cm이상	폭 또는 깊이중 하나만 적합	폭과 깊이 모두 부적합
	▷ 3.2.2.4.1 폭 적정 유무	폭 100cm이상	-	부적합
	▷ 3.2.2.4.2 깊이 적정 유무	깊이 180cm이상	-	부적합
2005.12.30 이후 신축 건축물 인 경우	▶ 3.2.2.5 바닥면 크기가 폭 140cm 이상, 깊이 180c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바닥면 크기가 폭 140cm이상이며, 깊이 180c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폭 또는 깊이중 하나만 적합	폭과 깊이 모두 부적합
	▷ 3.2.2.5.1 폭 적정 유무	폭 140cm이상	-	부적합
	▷ 3.2.2.5.2 깊이 적정 유무	깊이 180cm이상	-	부적합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2.3	대변기의 형태 및 보조손잡이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대변기 형태	▶ 3.2.3.1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좌식변기)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로 설치	양변기(좌식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40~45cm	양변기(좌식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40cm미만 또는 45cm초과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 3.2.3.1.1 변기의 형태는 수세식 양변기 설치	수세식 양변기(좌식변기) 설치	-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 3.2.3.1.2 수세식 양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로 설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45cm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미만, 45cm초과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수평 손잡이	▶ 3.2.3.2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60cm~70c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설치높이는 60cm~70cm이며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이내	설치높이 및 중심위치 중 1개만 기준에 적합	미설치
	▷ 3.2.3.2.1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적정 유무	설치높이는 60cm~70cm	설치높이는 60cm미만 70cm초과	미설치
	▷ 3.2.3.2.2 벽측 손잡이 위치(변기 기준)	벽측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0cm이내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초과	미설치
수직 손잡이	▶ 3.2.3.3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길이는 90cm이상 (ex: L자형 손잡이)	길이는 90cm미만 또는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미설치
	▷ 3.2.3.3.1 수직 손잡이 위치 적정 유무	가장 하단은 바닥면에서 60cm에 위치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미설치
	▷ 3.2.3.3.2 수직 손잡이 길이 적정 유무	90cm 이상	90cm 미만	미설치
회전식 손잡이	▶ 3.2.3.4 다른 쪽 손잡이의 회전식으로 설치 여부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 (상·하 또는 좌·우)	다른 쪽 손잡이는 고정식	미설치
	▷ 3.2.3.4.1 회전식손잡이 설치 형태	상·하회전식(1) 좌·우회전식(2)	/	미설치(3)
대변기 세정장치	▶ 3.2.3.5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설치	측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수조형)	후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 3.2.3.5.1 대변기세정장치 형태	광감지식(1)	-	-
		누름버튼식(2)		
레버식(3)				

3.3 소변기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3.1	일반화장실 내부에 장애인이 사용가능한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는가?

▶ 3.3.1.1 일반화장실 내부에 소변기 설치여부	유 (1) (→ 3.3.2 항목부터 시작)	무 (2) (→ 3.4 세면대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3.2	일반화장실 내부 소변기의 구조, 손잡이 등의 설치는 적정한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수평 손잡이	▶ 3.3.2.1 소변기의 수평손잡이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90cm	높이는 80~90cm	높이는 80cm미만 또는 90c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 3.3.2.2 수평손잡이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55cm내외	길이 50~60cm	길이는 50cm미만 또는 60c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 3.3.2.3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60cm 내외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55~65cm	좌우손잡이의 간격은 55cm미만 또는 65cm초과	수평손잡이 미설치
수직 손잡이	▶ 3.3.2.4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0~120cm로 설치	높이는 110~120cm	높이는 11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수직손잡이 미설치
	▶ 3.3.2.5 소변기의 수직손잡이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25cm내외	돌출폭은 20~30cm	돌출폭은 20cm미만 또는 30cm초과	수직손잡이 미설치

3.4 세면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4.1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가?

▶ 3.4.1.1 화장실 내부에 세면대 설치여부	유 (1)-장애인화장실에 설치됨 (장애인화장실내부의 세면대를 평가)	무 (2)-일반화장실에만 설치됨 (일반화장실의 세면대를 평가)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4.2	세면기 등의 설치 높이 등은 적정하며, 위생기기의 조작버튼 등의 설치 위치 등도 적정한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 3.4.2.1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85cm, 하단 높이가 65cm이상으로 설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이며 하단 높이는 65cm이상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초과 또는 하단높이가 65cm미만	상단높이 85cm초과이며 하단높이 65cm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 3.4.2.2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공간확보		깊이 25cm~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미만 공간 확보	하부 공간 전혀 없음
▶ 3.4.2.3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돌림식)으로 설치
▷ 3.4.2.3.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돌림식)(4)
▷ 3.4.2.3.2 모든 수도꼭지에 점자표시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3.5 욕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5.1	대상시설에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3.5.1.1 대상시설 욕실 설치여부	유 (1) (→ 3.5.2 항목부터 시작)	무(2) (→ 3.6 샤워실 및 탈의실 항목부터 시작)
---------------------------	----------------------------	-----------------------------------

※ 욕실이 없는 경우 무(2)로 평가하고, 3.5.2 항목은 평가하지 않음.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5.2	해당시설의 욕실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 하도록 활동공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5.2.1 욕실 등에 휠체어사용자의 출입가능 여부	출입구 유효폭이 80cm이상이며 단차가 2cm이하	유효폭과 단차중 1개만 기준에 적합	유효폭과 단차 모두 기준에 부적합
▷ 3.5.2.1.1 욕실 등의 출입구 유효폭	80cm이상	-	80cm미만
▷ 3.5.2.1.2 욕실 등의 단차	단차가 2cm이하	-	2cm초과
▶ 3.5.2.2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설치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밖여닫이문	안여닫이문 (내부공간 미확보)
▷ 3.5.2.2.1 출입문의 형태	자동문 (→3.5.2.3으로)	미닫이문 (→3.5.2.3으로)	여닫이문 (→3.5.2.2.2로)
▷ 3.5.2.2.2 여닫이문의 구조	밖여닫이문	안여닫이문 (내부 활동공간 140cm×140cm 확보)	안여닫이문 (내부 활동공간 140cm×140cm 미확보)
▶ 3.5.2.3 욕조의 전면에 휠체어 활동공간(유효 바닥면의 크기) 확보	활동공간 140cm×140cm확보(바닥면에 부착된 위생기기를 제외한 바닥면적)	활동공간 140cm×140cm확보(바닥면에 부착된 위생기기를 포함한 바닥면적)	활동공간 140cm×140cm 미확보
▶ 3.5.2.4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바닥은 미끄럼방지타일로 마감		바닥은 미끄러운 일반 타일로 마감
▶ 3.5.2.5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45cm 이내로 설치	욕조 높이 40~45cm	욕조 높이 40cm미만 또는 45cm~65cm이하	욕조 높이 65cm초과

※ 밖여닫이문: 욕실 바깥쪽으로 문이 열림(욕실 진입시 문을 당겨서 열고 들어감).

안여닫이문: 욕실 안쪽으로 문이 열림(욕실 진입시 문을 밀어서 열고 들어감).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5.3	욕실내에 설치된 샤워기 등은 장애인의 이용에 적정한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3.5.3.1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이동샤워기 설치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는 적정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설치	샤워기 미설치
▶ 3.5.3.2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사용가능한 위치		버튼식 비상용 벨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 위치에 있음	비상용 벨 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으나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데 어려움	비상용 벨 미설치
▷ 3.5.3.2.1 비상용 벨 설치 형태		비상용벨+인터폰※	비상용벨	인터폰
▷ 3.5.3.2.2 비상용 벨 위치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 위치에 있음	욕조로부터 손이 닿기 어려움	미설치
▶ 3.5.3.3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으로 설치 (누름버튼식)
▷ 3.5.3.3.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돌림식)(4)
▷ 3.5.3.3.2 수도꼭지에 점자표시(권장)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 비상용벨로 담당자와 상호 연락이 가능한 경우 비상용 벨+인터폰으로 선택

3.6 샤워실 및 탈의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6.1	대상시설에 샤워실 및 탈의실이 설치되어 있는가?

▶ 3.6.1.1 대상시설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여부	유 (1) (→ 3.6.1.2 항목부터 시작)	무 (2) (→ 4.1 유도 및 안내설비 항목부터 시작)
▶ 3.6.1.2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여부 (중복체크가능)	샤워실 (1) 3.6.2.1~3.6.2.5.1	탈의실 (2) 3.6.2.1, 3.6.2.6~3.6.2.7
▷ 3.6.1.2.1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 구조	샤워실 + 탈의실 공통 출입구 사용(1)	샤워실 별도 출입구로 진입(2) 탈의실 별도 출입구로 진입(3)

평가 번호	평가 내용
3.6.2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은 휠체어사용자가 이용가능하도록 활동공간 등이 확보되어 있는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출입 가능 여부	▶ 3.6.2.1 해당시설에 설치된 샤워실 (탈의실)에 휠체어 사용자의 출입 가능 여부	유효폭이 80cm이상이며 단차 2cm이하	유효폭과 단차중 1개만 기준에 적합	유효폭과 단차 모두 기준에 부적합
	▷ 3.6.2.1.1 유효폭	유효폭이 80cm 이상	문틀 포함 폭이 80cm 이상	문틀 포함 폭이 80cm 미만
	▷ 3.6.2.1.2 단차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 3.6.2.1.3 출입 가능 여부	출입구 전후면 통로 유효폭 120cm이상 확보	-	출입구 전후면 통로 유효폭 120cm미만 확보
샤워실	▶ 3.6.2.2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90cm×90cm 또는 75cm×130cm 이상	바닥면적은 90cm×90cm 또는 75×130cm 이상	가로, 세로중 한쪽이 90cm이상	가로, 세로 모두 90cm 미만
	▷ 3.6.2.2.1 샤워실 바닥표면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노후화되어 미끄러움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
	▶ 3.6.2.3 샤워용 의자의 높이는 바닥 면에서 40~45cm이내	의자 높이가 40~45cm	의자 높이가 40cm미만 또는 45cm초과	미설치
	▷ 3.6.2.3.1 샤워용 의자 형태	접이식 의자	이동식 샤워용 의자	미설치
	▷ 3.6.2.3.2 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수직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만 설치	수직손잡이만 설치
	▶ 3.6.2.4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 이 닿는 곳에 설치	이동샤워기 설치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 설치시 적정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설치	샤워기 미설치
	▶ 3.6.2.5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 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 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으로 설치
	▷ 3.6.2.5.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으로 설치(4)
	▷ 3.6.2.5.2 수도꼭지에 점자표시(권장)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탈의실	▶ 3.6.2.6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에서 40~120cm에 설 치	높이 40~120cm	높이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 3.6.2.7 탈의실의 수납공간 하부에는 휠체어 발판 공간 확보		깊이 25cm~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미만 공간 확보	하부 공간 전혀 없음 또는 수납공간 미설치

4. 안내시설

평가기준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시설접근 및 이용, 긴급시 피난 등을 위하여 시설에 대한 유도 및 안내표시가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

4.1 유도 및 안내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1	유도 및 안내설비로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4.1.1.1	점자안내판 (1) (→ 4.1.2.1 항목으로)	촉지도식 안내판 (2) (→ 4.1.2.1 항목으로)	음성안내장치 (3) (→ 4.1.2.4 항목으로)
대상시설에 설치된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중 설치된 설비는 모두 체크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2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대상건축물의 접근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해당시설을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유도 및 안내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점자 안내 판/ 촉지 도식 안내 판	▶ 4.1.2.1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를 병기(나란히)하여 표기,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일반안내판만 설치	미설치
	▶ 4.1.2.2 설치규격	점자안내판 중심점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100cm~120cm, 또는 벽면형인 경우 100cm~150cm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2.1 입식 안내설비	중심점 높이 바닥면에서 100cm~120cm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2.2 벽부형 안내설비	중심점 높이 바닥면에서 100cm~150cm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 4.1.2.3 점자표기방식	타공방식으로 제작 (부식형 제외)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음성 안내 장치	▶ 4.1.2.4 시각장애인이 해당시설의 주요 시설, 방의 배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음성안내장치의 설치	음성안내장치가 작동되며, 음량이 적절함	음성안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음	미설치
	▶ 4.1.2.5 음성안내장치의 설치위치	주출입구 점자블록 동선상에 설치	적정이 아닌 경우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3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4.1.3.1	유 (1) (→ 4.1.4 항목부터 시작)	무 (2) (→ 4.2 경보 및 피난설비 항목부터 시작)
점자블록 설치여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1.4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1.4.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4.1.4.2 설치위치	점자 및 촉지도식 안내판 30cm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미설치

4.2 경보 및 피난설비

평가 번호	평가 내용
4.2.1	시각 및 청각장애인도 비상시 빠르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설비가 잘 설치되어 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4.2.1.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시각장애인 대피용 청각경보시스템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 4.2.1.2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연속적으로 설치	비상시 청각장애인 대피용 시각경보시스템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연속성이 다소 떨어짐	경보.피난설비 미설치

5. 기타시설

5.1 객실 · 침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1.1	객실·침실이 현재 조사대상시설에 해당되는가?

▶ 5.1.1.1 객실·침실 해당여부	해당 (1) (→ 5.1.1.1.1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5.2 관람석 및 열람석 항목부터 시작)
- 객실수	▷ 5.1.1.1.1 전체객실수 ()실	▷ 5.1.1.1.2 장애인객실수 ()실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1.2	객실 또는 침실에는 '장애인등편의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객실을 확보하고 있는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1.2.1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 수의 (기숙사:1%이상, 숙박시설 0.5%이상) 설치되었는지		기숙사: 1%이상, 숙박시설 0.5%이상 설치	기숙사: 1%미만, 숙박시설 0.5%미만으로 설치	미설치
접근	▶ 5.1.2.2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로비 등 공용공간은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 여부	전체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의 모든 공용공간에 접근가능	일부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에 단차가 있어 접근시 도움이 필요	전체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식당 등의 모든 공용공간에 접근 불가능
	▷ 5.1.2.2.1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접근	접근가능	접근시 도움이 필요(단차있음)	접근 불가능
	▷ 5.1.2.2.2 식당 접근	접근가능	접근시 도움이 필요(단차있음)	접근 불가능
	▷ 5.1.2.2.3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접근	접근가능	접근시 도움이 필요(단차있음)	접근 불가능
출입문	▶ 5.1.2.3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의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80cm이상 확보	출입문의 유효폭이 80cm이상	출입문의 유효폭이 65~80cm미만	출입문의 유효폭이 0.65m미만
객실 내부 활동 공간	▶ 5.1.2.4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활동 공간 120cm 이상 확보	통로와 침대 측면 공간 각 120cm 이상씩 모두 확보	통로 또는 침대 측면 공간이 120cm 미만	통로 및 침대 측면 공간 모두 120cm 미만
	▷ 5.1.2.4.1 장애인용 객실 내부 통로	120cm 이상 확보	80cm~120cm미만 확보	80cm 미만 확보
	▷ 5.1.2.4.2 장애인용 객실 내부 침대 측면	120cm 이상 확보	80cm~120cm미만 확보	80cm 미만 확보
	▷ 5.1.2.4.3 장애인용 객실 침대 양측면	120cm 이상 확보	80cm~120cm미만 확보	80cm 미만 확보
침대 높이	▶ 5.1.2.5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cm ~ 45cm 범위	장애인 객실의 모든 침대 높이가 40cm ~ 45cm	장애인 객실 침대 중 1개 이상의 높이가 45cm초과	장애인 객실 모든 침대높이가 45cm초과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1.3	객실 내의 부설된 화장실은 대변기, 세면대, 욕조 중에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5.1.3.1 객실에 부설된 화장실 내부 설비 모두 체크	대변기 (1) 5.1.4.1~5.1.4.11	세면대 (2) 5.1.4.1/ 5.1.4.12~5.1.4.14	욕조 (3) 5.1.4.1/ 5.1.4.15~5.1.4.17	샤워실 (4) 5.1.4.1/ 5.1.4.18~5.1.4.24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1.4	객실에 부설된 화장실은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에 차별이 없도록 고려되어 있는가?

평가세부내용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1.4.1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바닥 단차(화장실과 대변기칸의 단차 포함)가 2cm이하		단차 2cm이하		단차 2cm초과
▶ 5.1.4.2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자동문, 박여닫이, 미닫이문, 접이문 (안여닫이인 경우 내부공간 확보)	잠금장치 있는 주름문	안여닫이 출입문 형태로 내부공간 미확보, 또는 잠금장치 없는 주름문
▷ 5.1.4.2.1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형태		자동문(1) 미닫이문(2) 박여닫이문(3) 안여닫이문-내부공간 확보(4)	주름문(5)-잠금장치 있음	미설치
▶ 5.1.4.3 대변기 칸막이의 출입문 통과 유효폭 80cm이상 확보		문의 유효폭이 80cm이상		문의 유효폭이 80cm미만
▶ 5.1.4.4 대상시설 2005년 12월 30일 이후 허가 신청된 신축건축물 여부		2005.12.29 이전 건축물 (1) (→ 5.1.4.5 다음 항목으로)	2005.12.30 이후 건축물 (2) (→ 5.1.4.6 항목으로)	
2005.12.29 이 전 준축인 건물 경우	▶ 5.1.4.5 바닥면 크기가 폭 100cm이상, 깊이 180cm이상 확보	바닥면 크기가 폭 100cm이상이며 깊이 180cm이상	폭과 깊이중 1개만 기준에 적합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5.1.4.5.1 폭 적정 유무	폭 100cm이상	-	부적합
	▷ 5.1.4.5.2 깊이 적정 유무	깊이 180cm이상	-	부적합
2005.12.30 이 후 신축인 건물 경우	▶ 5.1.4.6 화장실의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0cm이상, 깊이 180cm이상(대변기 길이제외) 확보	유효 바닥면 크기가 폭 140cm이상이며, 깊이 180cm이상(대변기 길이 방향으로 휠체어의 내부 회전이 가능함)	폭과 깊이중 1개만 기준에 적합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5.1.4.6.1 폭 적정 유무	폭 140cm이상	-	부적합
	▷ 5.1.4.6.2 깊이 적정 유무	깊이 180cm이상	-	부적합
대 변 의 형태	▶ 5.1.4.7 대변기는 양변기형태(좌식변기)이고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로 설치	양변기(좌식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40~45cm	양변기(좌식변기)이고 좌대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40cm미만 또는 45cm초과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 5.1.4.7.1 변기의 형태는 수세식 양변기 설치	수세식 양변기(좌식변기) 설치	-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 5.1.4.7.2 수세식 양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이상, 45cm이하로 설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45cm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40cm미만, 45cm초과	양변기(좌식변기)가 아님
수 평 손 잡이	▶ 5.1.4.8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에서 60cm~70cm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	설치높이는 60cm~70cm,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이내	설치높이 및 중심위치 중 1개만 기준에 적합	미설치
	▷ 5.1.4.8.1 수평손잡이 설치 높이 적정 유무	설치높이는 60cm~70cm	설치높이는 60cm미만 70cm초과	미설치
	▷ 5.1.4.8.2 벽측 손잡이 위치(변기 기준)	벽측 손잡이는 변기 중심에서 40cm이내	벽측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40cm초과	미설치

	▷ 5.1.4.8.3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설치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	다른쪽 손잡이는 고정식	미설치
수직 손잡이	▶ 5.1.4.9 대변기의 한쪽옆에는 수직손잡이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되어있으며 손잡이 길이는 90cm이상 (ex: L자형 손잡이)	길이는 90cm미만 또는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미설치
	▷ 5.1.4.9.1 수직 손잡이 위치 적정 유무	가장 하단은 바닥면에서 60cm에 위치	바닥면에서 부터 고정되어 설치	미설치
	▷ 5.1.4.9.2 수직 손잡이 길이 적정 유무	90cm 이상	90cm 미만	미설치
회전 손잡이	▶ 5.1.4.10 다른 쪽 손잡이의 회전식으로 설치 여부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전식 (상·하 또는 좌·우)	다른 쪽 손잡이는 고정식	미설치
	▷ 5.1.4.10.1 회전식손잡이 설치 형태	상하회전식(1) 좌우회전식(2)	-	미설치(3)
대기장치 변세장	▶ 5.1.4.11 대변기세정장치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또는 바닥 및 벽누름버튼식 설치	측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수조형)	후면 레버식 또는 버튼식 설치
	▷ 5.1.4.11.1 대변기세정장치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
세면대	▶ 5.1.4.12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는 상단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85cm, 하단 높이가 65cm이상으로 설치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이며 하단 높이는 65cm이상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에서 85cm초과 또는 하단높이가 65cm미만	상단높이 85cm초과이며 하단높이 65cm미만 또는 하부 공간 없음
	▶ 5.1.4.13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 공간확보	깊이 25cm~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미만 공간 확보	하부 공간 전혀 없음
	▶ 5.1.4.14 모든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돌림식)
	▷ 5.1.4.14.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으로 설치(4)
	▷ 5.1.4.14.2 모든 수도꼭지에 점자표시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욕실	▶ 5.1.4.15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이동샤워기 설치 ※높이가 조절형 샤워기는 적정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설치	샤워기 미설치
	▶ 5.1.4.16 욕실에는 비상용 벨이 설치되어 있으며 비상용 벨은 욕조로부터 사용가능한 위치	버튼식 비상용 벨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 위치에 있음	비상용 벨 또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으나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데 어려움	비상용 벨 미설치
	▷ 5.1.4.16.1 비상용벨 설치 형태	비상용벨+인터폰※	비상용벨	인터폰
	▷ 5.1.4.16.2 비상용벨 위치	욕조로부터 손이 닿는 위치에 있음	욕조로부터 손이 닿기 어려움	미설치
	▶ 5.1.4.17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으로 설치
	▷ 5.1.4.17.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돌림식)(4)
	▷ 5.1.4.17.2 수도꼭지에 점자표시(권장)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샤워실	▶ 5.1.4.18 샤워실의 유효바닥면적은 90cm×90cm 또는 75cm×130cm 이상	바닥면적은 90cm×90cm 또는 75cm×130cm 이상	가로, 세로중 한쪽이 90cm 이상	가로, 세로 모두 90cm 미만
	▷ 5.1.4.18.1 샤워실 바닥표면	물에 젖어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	노후화되어 미끄러움	미끄러운 재질로 설치
	▶ 5.1.4.19 샤워용 의자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40~45cm이내	의자 높이가 40~45cm	의자 높이가 40cm미만 또는 45cm초과	미설치
	▷ 5.1.4.19.1 샤워용 의자 형태	접이식 의자	이동식 샤워용 의자	미설치
	▷ 5.1.4.19.2 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수직손잡이 설치	수평손잡이만 설치	수직손잡이만 설치
	▶ 5.1.4.20 샤워기는 앉은 상태에서 손이 닿는 곳에 설치	이동샤워기 설치 ※높낮이 조절형 샤워기 설치시 적정	고정형 입식샤워기만 설치	샤워기 미설치
	▶ 5.1.4.2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광감지식, 레버식, 누름버튼식으로 설치	-	다이얼식으로 설치
	▷ 5.1.4.21.1 수도꼭지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다이얼식(돌림식)(4)
	▷ 5.1.4.21.2 수도꼭지에 점자표시(권장)	수도꼭지 레버에 점자표시(냉온수구분)	점자표지가 손상되거나, 수도꼭지 레버에 설치되지 않음. / 일부만 설치됨	점자표시 없음
탈의실	▶ 5.1.4.22 탈의실의 수납공간 높이는 바닥면에서 40~120cm에 설치	높이 40~120cm	높이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수납공간 미설치
	▶ 5.1.4.23 탈의실의 수납공간 하부에는 휠체어 발판 공간 확보	깊이 25cm~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미만 공간 확보	하부 공간 전혀 없음 또는 수납공간 미설치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1.5	객실 또는 침실은 진·출입구, 화장실, 샤워 및 욕실 등이 장애인을 고려하여 갖추어져있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1.5.1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에 설치된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80~120cm로 설치	모든 항목이 바닥면에서 80~120cm로 설치	일부 항목이 바닥면에서 80~120cm초과 설치	모든 항목이 80~120cm 초과 설치	
▶ 5.1.5.2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 및 화장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이 설치, 장애인용 객실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 설치	객실과 화장실에 각각 초인종, 초인등, 경보설비 모두설치	초인종, 초인등, 경보설비 객실과 화장실 둘 중 한곳 만 설치	초인종, 초인등, 경보설비 객실과 화장실 모두 미설치된 경우	
객실	▷ 5.1.5.2.1 초인종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 5.1.5.2.2 초인등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 5.1.5.2.3 경보설비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화장실	▷ 5.1.5.2.4 초인종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 5.1.5.2.5 초인등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 5.1.5.2.6 경보설비 설치 유무	설치	-	미설치

5.2 관람석·열람석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2.1	관람석·열람석이 현재 조사대상시설에 해당되는가?

▶ 5.2.1.1 관람석·열람석 해당여부	해당 (1) (→ 5.2.1.1.1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5.3 접수대·작업대 항목부터 시작)
▷ 5.2.1.1.1 대상시설 (중복체크 가능)	관람석 (1)	열람석 (2)
- 좌석수	▷ 5.2.1.1.2 전체좌석수 ()석	▷ 5.2.1.1.3 휠체어 사용자 좌석수 ()석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2.2	해당시설의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2.2.1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	출입구 및 피난통로 옆에 설치	단차 없이 연결됨	단차 있어 연결 안됨
▶ 5.2.2.2 휠체어사용자용 관람석인 경우,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이 90cm 이상, 깊이 130cm이상으로 설치	유효바닥면적이 1석당 폭 90cm이상이며 깊이 130cm이상	폭과 깊이중 1개만 기준에 적합	폭과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5.2.2.3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은 높이는 바닥면에서 70~90cm이며, 하단은 높이가 65cm이상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4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전체 높이는 70~90cm, 하부에는 높이 65cm이상, 깊이 45cm이상 확보 (높낮이 조절형 포함)	전체높이, 하부높이 및 깊이중 1~2개만 기준에 적합	전체높이, 하부높이 및 깊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
▶ 5.2.2.4 관람석, 열람석 휠체어사용자용 좌석 설치비율	사용가능좌석 1%이상 설치	사용가능좌석 1%미만 설치	미설치

※ (5.2.2.4 참고)전체좌석이 2,000석 이상인 경우, 휠체어 사용자 좌석이 20석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적정으로 표기

5.3 접수대 · 작업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3.1	접수대·작업대가 현재 조사대상시설에 해당되는가?

▶ 5.3.1.1 접수대·작업대 해당여부	해당 (1) (→ 5.3.1.1.1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5.4 매표소·판매대·음료대 항목부터 시작)
▷ 5.3.1.1.1 대상시설 (중복체크 가능)	접수대 (1)	작업대 (2)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3.2	해당시설의 접수대 및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평가 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3.2.1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단차)	2cm이하	2cm초과, 경사로 설치	2cm초과
▶ 5.3.2.1.1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전면활동공간)	140cm×140cm이상 (테이블하부공간포함)	140cm×140cm미만~ 120cm×120cm이하 (테이블하부공간포함)	120cm×120cm미만 (테이블하부공간포함)
▶ 5.3.2.2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높이는 바닥면에서 70~90cm 로 설치	바닥면에서 상단높이가 높이가 70~90cm		바닥면에서 상단높이가 높이가 70~90cm 이외
▶ 5.3.2.3 하단은 높이가 65cm이상	하부높이가 65cm이상	하부높이가 65cm미만	하부 공간 없음
▶ 5.3.2.4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4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깊이 25cm~45cm 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미만 공간 확보	하부 공간 전혀 없음

5.4 매표소 · 판매대 · 음료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1	매표소·판매대·음료대가 현재 조사대상시설에 해당되는가?

▶ 5.4.1.1 매표소·판매대·음료대 해당여부	해당 (1) (→ 5.4.2 항목부터 시작)	비해당 (2) (→ 6.1 비치용품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2	대상시설에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중 어느 것이 설치되어 있는가? (복수선택 가능)

▶ 5.4.2.1 대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매표소, 판매대, 음료대 모두 체크	매표소 (1) (→ 5.4.3.1 매표소)	판매대 (2) (→ 5.4.3.4 판매대)	음료대 (3) (→ 5.4.3.7 음료대)
--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3	해당시설의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등은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에 적정한가?

평가		1(적정)	2(미흡)	3(미설치)
평가세부내용				
매표소	▶ 5.4.3.1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70~90cm이하에 설치	바닥면에서 상부 높이는 70~90cm	바닥면에서 상부 높이는 70cm미만 또는 90cm초과	휠체어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매표소 없음
	▶ 5.4.3.2 하부는 바닥면에서 65cm이상에 설치	하부에는 높이 65cm이상	하부에는 높이 65cm미만	하부 공간 전혀 없음
	▶ 5.4.3.3 깊이 4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깊이 25cm~45cm이상 공간 확보	깊이 25cm미만 또는 45cm이상 공간 확보	하부에는 휠체어발판이 들어갈 공간이 없음

※ 다만, 2005년 12월 29일 이전 허가신청된 건물인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매표소의 높이는 110cm 이하에 설치하며, 하부는 바닥면에서 높이 65cm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

판매대	▶ 5.4.3.4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 등은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상품출구 등이 40~120cm의 범위에 설치	동전투입구·조작·상품출구 모든 높이는 40~120cm설치	동전투입구·조작·상품출구 일부 높이는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동전투입구·조작·상품출구 모든 높이는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4.1 동전투입구 높이	40~120cm설치	-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4.2 조작버튼 높이	40~120cm설치	-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4.3 상품출구 높이	40~120cm설치	-	40cm미만, 또는 120cm초과 설치
	▶ 5.4.3.5 조작버튼은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로 표시	점자표시	/	
	▶ 5.4.3.6 누름버튼식 등으로 설치	누름버튼식 등 설치	/	

음료대	▶ 5.4.3.7 음료대의 분출구 높이는 70~80cm로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70~80cm 설치	분출구의 높이는 70cm미만, 또는 80cm초과 설치	휠체어 사용자 접근불가
	▶ 5.4.3.8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으로 설치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조작기 설치	/	
	▷ 5.4.3.8.1 조작기 형태	광감지식(1) 누름버튼식(2) 레버식(3)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4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는가?

▶ 5.4.4.1 점자블록 설치여부	유 (1) (→ 5.4.5 항목부터 시작)	무 (2) (→ 6.1 비치용품 항목부터 시작)
------------------------	----------------------------	-------------------------------

평가 번호	평가 내용
5.4.5	점자블록을 적절하게 설치하였는가?

평가 평가세부내용	1(적정)	2(미흡)	3(미설치)
▶ 5.4.5.1 점자블록 형태	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비표준형 점자블록 설치	미설치
▶ 5.4.5.2 설치위치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에 점자블록을 30cm전면에 설치		미설치

6. 비치용품

6.1 비치용품 설치여부

평가 번호	평가 내용
6.1.1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비치용품은 잘 설치 되어있는가?

대상시설		비치용품	비치(1)	미비치(2)
6.1.1.1 제1종근린생활시설	6.1.1.1.1 읍·면·동사무소	▷ 6.1.1.1.1.1 점자업무안내책자		
		▷ 6.1.1.1.1.2 8배율이상의 확대경		
		▷ 6.1.1.1.1.3 공중모사전송기		
		▷ 6.1.1.1.1.4 보청기기		
		▷ 6.1.1.1.1.5 편의시설안내지도		
	6.1.1.1.2 우체국	▷ 6.1.1.1.2.1 8배율이상의 확대경		
		▷ 6.1.1.1.2.2 공중모사전송기		
		▷ 6.1.1.1.2.3 보청기기		
		▷ 6.1.1.1.2.4 점자업무안내책자		
	6.1.1.1.3 전신전화국	▷ 6.1.1.1.3.1 8배율이상의 확대경		
		▷ 6.1.1.1.3.2 공중모사전송기		
		▷ 6.1.1.1.3.3 보청기기		
▷ 6.1.1.1.3.4 점자업무안내책자				
6.1.1.1.4 공공도서관	▷ 6.1.1.1.4.1 보청기기			
	▷ 6.1.1.1.4.2 저시력용 독서기			
6.1.1.2 문화 및 집회시설	6.1.1.2.1 공연장	▷ 6.1.1.2.1.1 보청기기		
		▷ 6.1.1.2.1.2 점자공연안내책자		
	6.1.1.2.2 관람장	▷ 6.1.1.2.2.1 보청기기		
		▷ 6.1.1.2.2.2 점자공연안내책자		
6.1.1.2.3 전시장	▷ 6.1.1.2.3.1 휠체어			
	▷ 6.1.1.2.3.2 점자전시안내책자			
6.1.1.2.4 동·식물원	▷ 6.1.1.2.4.1 휠체어			
	▷ 6.1.1.2.4.2 점자전시안내책자			
6.1.1.3 판매시설	6.1.1.3.1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 6.1.1.3.1.1 음성계산기		
6.1.1.4 교육연구시설	6.1.1.4.1 도서관	▷ 6.1.1.4.1.1 저시력용 독서기		
		▷ 6.1.1.4.1.2 음성지원 컴퓨터		
		▷ 6.1.1.4.1.3 보청기기		
		▷ 6.1.1.4.1.4 점자프린터		
		▷ 6.1.1.4.1.5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6.1.1.5 업무시설	6.1.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6.1.1.5.1.1 점자업무안내책자 (시·군·구청에 한한다)		
		▷ 6.1.1.5.1.2 휠체어		
		▷ 6.1.1.5.1.3 8배율 이상의 확대경		
		▷ 6.1.1.5.1.4 공중모사전송기		
		▷ 6.1.1.5.1.5 보청기기		
		▷ 6.1.1.5.1.6 점자업무안내책자		
		▷ 6.1.1.5.1.7 편의시설안내지도		
		▷ 6.1.1.5.1.8 컴퓨터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		
6.1.1.6 숙박시설	6.1.1.6.1 관광숙박시설	▷ 6.1.1.6.1.1 점자관광안내책자		

※ 1. 비치용품은 출입구 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 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